KOSHA GUIDE E - 116 - 2021

>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> > 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종운

o 개정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시스템연구실

o 개정자: (전)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상원

o 제정경과

- 2008년 7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8년 9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
- 2011년 12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2021년 9월 전기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o 관련규격

- IEC 60364-4-43 : Electrical installations of buildings Protection for Safety Protection against over-current
- 미국전기공사규정(NEC: National Electrical Code) Article 240
- KOSHA GUIDE (전기설비설치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)
- KOSHA GUIDE (저압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-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핸드북
- o 관련법령·고시 등
 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5조 (과전류 보호장치) 및 전기설비기술기준
- ㅇ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설명서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05조 (과전류 보호장치)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과 설치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사업장 내에 설치된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과부하전류와 고장 시의 단락전 류를 차단하기 위한 과전류 보호장치를 선정·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과부하전류"라 함은 정격용량을 초과한 부하설비를 운전하는 경우, 정격전류 값을 초과하여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.
 - (나) "단락전류"라 함은 회로 간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, 선로에 흐르는 매우 큰 값의 전류를 말한다.
 - (다) "과전류"라 함은 전기기기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허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 로서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.
 - (라) "전원의 자동차단"이라 함은 고장이 발생한 경우, 보호장치가 동작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용도체 1개 이상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.
 - (마) "보호장치"라 함은 배선용차단기,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 누전차단기, 퓨즈 등을 말한다.
 - (바) "TN계통"이라 함은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시키고, 전기기기의 접지는

KOSHA GUIDE

E - 116 - 2021

전원측 접지극에 보호도체로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.

- (사) "TT계통"이라 함은 전원측의 한 점을 직접 접지시키고, 전기기기의 접지는 이와는 별도의 접지극에 접속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(아) "IT계통"이라 함은 모든 충전부를 대지에서 격리시키거나 한 점에서 임피던 스 접지시키고,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부는 독립접지 또는 공통접지한 방식을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일반사항

- (1) 전원회로에는 과전류가 흐를 경우 전선의 절연피복, 접속부, 단자부 또는 전선 주위의 온도가 위험한 수준이 되기 전에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한다.
- (2)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는 설치된 지점에서의 최대 예상단락전 류를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.
- (3)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선로는 과부하전류 또는 유사한 크기의 과전 류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(4) 전원회로에 대한 보호장치가 회로에 연결된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, 전기기기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한다.
- (5)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의 전류는 자동차단이 되는 전원회로는 과부하전류 및 단 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.

5.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시의 안전조치

- (1) 차단기의 개폐상태 표시
 - (가) 차단기에는 개방 또는 투입의 상태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한다.
 - (나) 배전반 내에서 차단기의 조작이 수직방향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올릴 때 전원이 투입되도록 설치한다.
- (2) 차단기 또는 퓨즈의 작동
 - (가) 퓨즈 또는 차단기는 이의 작동 시 발생되는 전기불꽃에 의해 작업자가 화 상을 입지 않도록 차폐를 하거나, 화상위험이 없도록 조치한다.
 - (나) 차단기의 손잡이 또는 레버가 순간적으로 작동하여 작업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격리시키거나 충돌 예방조치를 한다.
- (3) 단로기의 설치
 - (가) 대지전압 150 V 이상의 퓨즈 및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된 곳에 유자격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단로기를 함께 설치한다.
 - (나) 단로기는 전원을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- (4) 접지도체

전동기의 과전류 보호장치는 모든 극을 동시에 개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도체를 차단하여서는 안 된다.

6. 전원공급회로의 보호

- (1) 상 도체의 보호
 - (가)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상 도체에 대하여 과전류 검출을 실시하고, 과전류가 검출 되면 6항(1)(나)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전선만을 차단한다.

- (나)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상 도체만을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의 경우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면 상 도체 중 어느 하나에는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
 - ① 동일 회로 또는 전원 측에서 불평형을 감지하고 모든 상도체를 차단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
 - ② ①에서 규정한 보호장치의 3상 회로의 부하 측에 위치한 회로의 인위적 중성점으로부터 중성선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
- (다) 3상 전동기 등과 같이 단상 차단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조 치를 해야 한다.

(2) 중성선의 보호

(가) TT 또는 TN계통

- ①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 도체의 단면적 이상이고 그 중성선의 전류가 상도체의 전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 또는 차단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.
- ② 중성선의 단면적이 상 도체의 단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단면적에 적합한 과전류 검출기를 설치하고, 설계전류를 초과한 과전류가 검출되면 상도체를 차단한다. 이 경우 중성선은 차단할 필요가 없다.
- ③ ①과 ②의 경우 모두 단락전류로부터 중성선을 보호해야 하며, 중성선에 관한 요구사항은 차단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중성선과 보호도체 겸용 (PEN) 도체에도 적용한다.
- ④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성선의 과전류 검출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.
 - ⑦ 중성선이 전원회로의 상 도체 보호장치를 통해 단락전류에 대해서 보호 되는 경우
 - ① 정상운전 시 중성선에 흐르는 최대전류가 전선의 허용전류 값 이하인 경우

(나) IT계통

① IT계통에서 중성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각 회로의 중성선에 과전류 검출기능을 구비하도록 한다.

KOSHA GUIDE

E - 116 - 2021

- ② 과전류가 검출되는 경우 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을 차단한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.
 - ⑦ 설비의 공급전원 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해서 중성선이 과전류로부터 보호가 되는 경우
 - ① 중성선 허용전류의 0.2배를 넘지 않는 누전차단기로 중성선을 보호하는 경우로서, 누전 차단기가 중성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을 차단하는 경우
- (3) 중성선의 차단 및 재접속

중성선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중성선이 상 도체보다 늦게 차단되어야 하며, 재접속하는 경우에는 중성선이 상 도체보다 동시 또는 그 이전에 접속되어야 한다.

7.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

(1)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

과부하전류에 대해 전원공급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다음의 식 (1), (2)를 만족하도록 선정한다.

$$I_B \leq I_n \leq I_Z \quad \cdots \qquad (1)$$

$$I_2 \leq 1.45 \times I_Z \quad \cdots \quad (2)$$

여기에서 I_B : 회로의 설계전류

 I_n :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_Z : 선로의 연속 허용전류

 I_2 : 보호장치를 응답시간 이내에 동작시키는 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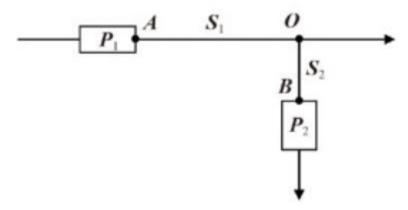
- ① 조정할 수 있게 설계 및 제작된 보호장치의 경우, 정격전류 I_n 은 사용현장 에 적합하게 조정된 전류의 설정값이다.
- ② 보호장치의 유효한 동작을 보장하는 전류 I_2 는 제조자로부터 제공되거나 제품 표준에 제시되어야 한다.
- ③ 식 (1), (2)에 따른 보호는 조건에 따라서는 보호가 불확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에는 식 (2)에 따라 선정된 케이블보다 단면적이

큰 케이블을 선정하여야 한다.

④ I_B 는 상도체를 흐르는 설계전류이거나 함유율이 높은 영상분 고조파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 중성선에 흐르는 전류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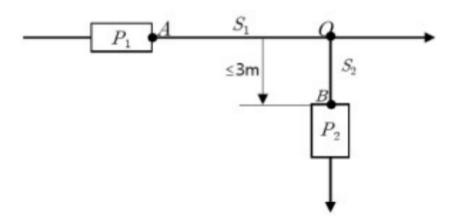
(2)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

- (가) 전선의 단면적, 종류, 설치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전선의 허용전류 값이 저하되는 지점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한다.
- (나) 과부하 보호장치는 분기점(O)에 설치해야 하나, 분기점(O)과 분기회로의 과부 하 보호장치의 설치점 사이의 배선 부분에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 회로가 접속되어 있지 않고,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배선에 설치할 수 있다.
 - ① 다음 <그림 1>과 같이 분기회로 (S_2) 의 과부하 보호장치 (P_2) 의 전원측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8항의 '단락전류에 대한 보호'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, P_2 는 분기회로의 분기점(O)으로부터 부하측으로부터 거리와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다.



<그림 $1 > 분기회로(S_2)의 분기점(O)에 설치되지 않는 분기회로 과부하 보호장치$

② 다음 <그림 2>와 같이 분기회로 (S_2)의 과부하 보호장치(P_2)는 전원측에서 분기점(O)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,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된 경우, 분기회로의 보호장치는 분기회로의 분기점(O)으로부터 3 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

<그림 $2 > 분기회로(S_2)의 분기점(O)에서 <math>3 \text{ m}$ 이내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

(3)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

- (가)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선로에 대한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화재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설비 또는 특수설비 및 특수장소 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① 전선의 단면적, 종류, 설치방법 등이 변경된 선로에서 전원측의 보호장치에 의해 과부하전류 보호가 유효한 경우. 부하측 전선의 보호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.
 - ② 8항의 '단락전류에 대한 보호' 조치가 되어 있고, 분기회로나 콘센트가 없어 과부하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없는 선로중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 보호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하여 과부하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③ 통신선, 제어선, 신호선 등의 약전류 선로 및 과부하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지중선 또는 가공선으로 구성된 배전선로에는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.

(나) IT 계통에서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

- ① 상기 (가)호의 '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'은 IT계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 다만, IT계통의 과부하 선로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보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 - ⑦ 기본적인 감전보호조치가 된 경우 안전보건기술지침 "저압 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" 5항 참조)

- ① 2차 고장발생시 즉각 동작하는 누전차단기에 의해 각 회로가 감전으로 부터 보호되는 경우
- ⓒ 다음의 기능을 구비한 절연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
 - 초기 고장이 발생할 경우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 또는
 - 고장 시 운전의 연속성과 2차 고장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수리 또는
 지속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기능
- ② 중성선이 없는 IT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상 도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상 도체 중 하나의 선로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.
- (다) 안전상의 이유로 과부하 보호장치의 생략

예상치 못한 선로의 개방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전원공급 회로에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는 생략하고, 과부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. 이러한 예로서는 회전기계의 여자회로, 인양설비의 전자석 전원회로, 변류기의 2차 회로,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및 가스누출경보 등이 있다.

(4) 병렬도체에서의 과부하 보호장치

한 개의 과부하 보호장치가 여러 개의 병렬도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병렬도체 내에 분기회로가 있어서는 안되며, 병렬도체를 분리시키는 단로기나 개폐기를 사 용하여서도 안된다. 병렬도체 구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(가) 병렬도체를 구성하는 각 도체는 전류가 균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.
- (나) 병렬도체는 같은 재질 및 단면적을 갖고 길이가 동일해야 한다. 또한 전체 구간에서 회로의 분기가 없어야 하며, 다심케이블, 꼬인 단심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다) 병렬도체의 전류는 전류차가 각 도체의 설계전류 값의 10 % 이하가 되어야 한다. 전류차가 10 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균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(라) 병렬도체의 전류차가 10 %를 초과하는 불균등한 경우에는 각 도체의 설계전 류와 과부하에 관한 요건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각 도체별로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8. 단락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

(1) 단락전류의 결정

단락전류로부터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보호장치가 설치될 지점에서의 단 락전류를 예측하여야 한다. 이는 계산식에 의하거나 측정값에 의해 결정된다.

(2) 단락 보호장치의 선정

단락 보호장치는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용량을 선정한다.

- (가) 단락전류 차단용량은 해당 설치지점에서의 단락전류 예측치보다 큰 값을 선정한다. 다만, 상기 차단용량의 보호장치가 전원측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부하측의 보호장치는 이보다 낮은 차단용량을 선정할 수 있다.
- (나) 단락 보호장치는 단락전류의 열작용에 의한 온도상승이 전선의 허용온도를 초과하기 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선정한다. 단락전류의 지속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, 통상 사용조건에서의 단락전류에 의해 절연체의 허용온도에 도달하기 까지의 시간 t는 식 (3)을 통해 계산된다.

$$\sqrt{t} = k \times S / I \qquad \cdots \qquad (3)$$

여기에서 t: 단락전류 지속시간 (s)

S: 전선의 단면적 (㎡)

I: 단락전류의 실효치 (A)

k: 전선의 계수(도체의 저항률, 온도상수, 열용량을 고려한 값)

(다) 단락전류의 비대칭 부분이 발생하는 0.1초 미만의 매우 짧은 시간에 대하여, 단락전류 보호장치의 k^2S^2 값이 제조자가 제시하는 통전허용에너지 I^2t 의 값보다 크도록 선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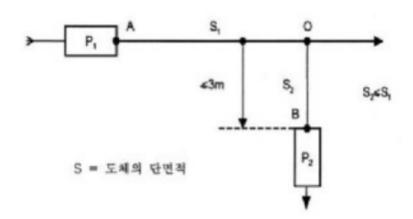
<표 1> 상 도체에 대한 k의 값

	도체절연 형식							
구 분	PVC		PVC		에틸렌프로필 렌 고무/	고무	무기 재료	
	(열가		(열가	소성)	가교	(열경화성)	PVC	노 출
			90 ℃		폴리에틸렌 (열경화성)	60 ℃	외장	비외장
단면적(mm²)	$\leq 300 \text{ mm}^2$	>300 mm ²	$\leq 300 \text{ mm}^2$	$>$ 300 mm 2				
초기 온도(℃)	70		90		90	60	70	105
최종 온도(℃)	160	140	160	140	250	200	160	250
도체 재료:								
구리 알루미늄	115	103	100	86	143	141	115	135/115 ^{₹)}
땜납접속의 구리도체	76 115	68	66 -	57 -	94	93 -	_	_

- 주)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노출도체에 대하여는 이 값을 적용한다.
- 1) 다음 사항에 대한 다른 k 값은 검토중임
- 가는 도체(특히, 단면적이 10 ㎜ 미만)
- 기타 다른 형식의 전선 접속
- 노출 도체
- 2) 단락보호장치의 정격전류는 케이블의 허용전류보다 클 수 있음
- 3) 위의 계수는 KS C IEC 60724(정격전압 1 kV 및 3 kV 전기케이블의 단락 온도 한계)에 근거
- 4) 계수 k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IEC 60364-5-54(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-접지설비 및 보호 도체)의 부속서 A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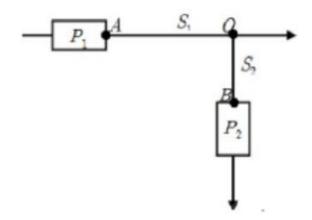
(3) 단락 보호장치의 설치

(가) 단락 보호장치는 분기점(O)에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그림 3과 같이 분기 회로의 단락 보호장치 설치점(B)과 분기점(O)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,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는 경우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 P_2 는 분기점으로부터 3 m까지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

<그림 3 > 분기회로 단락보호장치 (P_2) 의 제한된 위치 변경

(나) 도체의 단면적이 줄어들거나 다른 변경이 이루어진 분기회로의 시작점(O)과 이 분기회로의 단락 보호장치(P_2) 사이에 있는 도체가 전원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(P_1)에 의해 단락보호가 되는 경우에 P_2 의 설치위치는 분기점(O)로부터 거리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. 즉, 전원측 단락 보호장치(P_1)은 부하측 배선(S_2)에 대하여 8항의 '단락전류에 대한 보호'에 따라 단락보호를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한다.



<그림 $4 > 분기회로 단락보호장치<math>(P_2)$ 의 설치 위치

(4) 단락 보호장치의 생략

배선의 단락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가연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 다.

- (가) 제어반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, 변압기, 정류기, 축전지와의 연결전선 및 제어반 보호장치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
- (나) 7항(3)의 (다)호에서 언급된 안전상의 이유와 마찬가지로, 설비의 전원차단 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
 - ① 회전기의 여자회로,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회로, 변류기 2차회로
 - ② 소방설비의 전원회로, 가스누출경보 등
- (다) 계기용 변압기 및 변류기 2차측의 측정회로
- (5) 병렬회로에서의 단락 보호장치
 - (가) 병렬회로에서 발생한 어떠한 단락전류에 대해서도 보호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경우, 한 개의 보호장치만 설치하여도 된다. 병렬 회로에서 단락전류가 전선별로 분담이 되고, 병렬회로의 양단에서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(나) 한 개의 보호장치는 단락전류로부터의 보호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다음 의 추가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 - ① 병렬회로에서의 단락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전선관 설치 등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.
 - ② 병렬회로의 선로가 가연성 물질 근처에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.
 - ③ 병렬회로의 선로가 상 도체 2개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전선도체의 전원측에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한다.
 - ④ 병렬회로의 선로가 상 도체 3개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단락 보호장치를 각 전선도체의 전원측과 부하측에 각각 설치한다.

9. 과부하 및 단락 보호장치의 기능조정

(1) 한 개의 보호장치로 두 가지 기능 수행

KOSHA GUIDE

E - 116 - 2021

설치되어 있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7항의 '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' 내용 및 8항의 '단락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'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.

- (2) 개별 보호장치로 각각의 기능 수행
 - (가)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각각의 보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7항의 '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' 내용과 8항의 '단락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' 내용의 요구사항을 보호장치 각각에 대하여 적용한다.
 - (나) 과부하전류와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각각 설치한 보호장치는 단락 보호장치의 통전허용에너지가 과부하 보호장치에 손상을 주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조정을 하여야 한다.

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1.00.00

○ 개정자 : 최상원

○ 개정사유 :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 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
○ 주요 개정내용

- 6. 전원공급회로의 보호에서 (1) 상도체의 보호, (2) 중성선의 보호

- 7.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서 식 (1), (2) 구체화

- 7.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서 설치조건 구체화

- 8. 단락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에서 설치조건 구체화